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政策課題

金 聖 在

(韓國外國語大 教授 · 經營學博士)

◀ 目 次 ▶

I. 머리말

II. 金融環境變化와 保險經營

1. 保險市場의 世界化 趨勢
2. 生命保險市場의 構造變化
3. 金利自由化와 保險經營

III.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意義

1. 契約者配當의 性格
2. 契約者配當金額의 決定과 配分
3. 株式會社에 의한 配當附契約販賣와 契約者配當

IV. 우리나라의 現行 契約者配當制度和 配當準備金의 積立方法

1. 現行 契約者配當制度
2. 契約者配當準備金의 적립과 剩餘金의 처리

V. 現行 契約者配當과 準備金積立制度의 問題點

1. 政府의 지침에 의한 劃一的 規制
2. 費差損의 發生과 利源別 獨立 配當
3. 契約者配當에 대한 情報의 不在

4. 株主와 契約者間 關係의 未定立

5. 契約者間의 公平性

6.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의 不充分

VI.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政策課題

1. 政策方向
2. 契約者配當 自律化의 先決課題

VII. 맺는말

I. 머리말

우리나라 生命保險產業은 市場開放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와 金融의 國際化, 自律化 趨勢로 인하여 資産運用상의 투자환경의 복잡화와 함께 보험영업상의 競爭이 심화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특히, 生命保險은 보험 특유의 보장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축의 수단이 될 수 있어, 金融自律화와 더불어 보험상품과 타금융기관의 저축상품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질 것이 예상되어 生命保險會社의 競爭力提高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自由競爭市場에서 보험회사의 능률향상에 의한

價格引下는 보험회사의 市場競爭力의 向上을 의미하고 비능률적인 보험회사는 도태되어진다. 정부 기관의 감독하에 가격경쟁이 제한된 상황하에서 비능률적인 보험자들이 보험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능률적인 보험자는 가격인하를 통한 市場占有率의 증가를 대신하여 超過利益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와 시장행위의 상황에 있어 감독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험회사의 經營合理化 對策을 수립하고 不實經營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經營非能率은 보험회사 자체의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 스스로의 經營合理化 노력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의 자발적인 경영 합리화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본원리는 競爭의 原理이다.

따라서, 生命保險產業이 자율적인 금융환경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生命保險會社들의 競爭力提高와 契約者保護를 위해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契約者配當政策은 이제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격경쟁의 요소인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추세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되기 전의 성급한 自律化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自律化의 目的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이 있다.

本 論文의 目的은 점차 국제화되고 자유화되고 있는 금융환경하에서 生命保險會社의 경영효율화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와 계약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契約者配當政策의 方向과 이를 위한 여러가지 先決 課題에 대하여 研究하는 데 있다.

II. 金融環境變化와 保險經營

1. 保險市場의 世界化 趨勢

유럽 주요 12개국들의 경제는 1992년말 單一市場으로 統合되었다. 이들 EC회원국들은 자유로운 서서비스무역을 막는 규제장벽을 제거하고, 회원국들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운영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영업활동에 관한 것을 살펴보면, EC보험입법의 근간을 제공하는 보험지침서는 회원국들에 대하여 지점이나 현지법인의 설립자유를 부여하고 있는 한편, 회원국에서의 서서비스 위주의 保險營業은 그 국가의 감독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어 서서비스위주의 무역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EC국가들이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간의 합병, 조인트벤처 또는 기업동맹에 대한 제약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EC의 保險會社, 銀行, 證券會社 등의 금융기관들사이에 합병, 인수, 조인트벤처, 지점 및 현지법인 설립의 움직임이 가속될 전망이다. 이는 非EC국가들에게는 다양한 금융상품개발과 서서비스능력을 보유한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 보험료수입의 30%를 점하고 있는 美國 生命保險會社들은 이 단일화된 대규모 EC보험사들이 국제보험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까지 침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기본적으로 保險, 銀行, 證券 業務의 分離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監督政策을 고려할 때, EC보험사들의 미국시장에서의 위협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다양한 서서비스능력을 가진 EC보험사들의 미국시장에서의 영업활동은 미국 보험사들로 하여금 금융서서비스영업의 規制緩和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EC회원국들은 EC보험사들에게 保險市場을 開放하는 국가의 보험사들에 한하여 EC시장을 허용하는 互惠主義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국보험사들의 EC영업은 EC에 준하는 規制撤廢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保險市場의 國際化를 촉진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서서비스무역의 장벽감소를 위한 GATT의 서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다. 현재 GATT회원국들 사이에 이 협정의 협상이 수년간 진행중이며, 이 협정이 체결될 경우 이는 모든 GATT회원국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통합된 EC와 더불어 生命保險產業의 國際化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2. 生命保險市場의 構造變化

1987년 이전 30여년간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은 새로운 회사의 시장진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6개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상품교역의 급증과 미국측의 적자증가는 우리나라 서서비스시장에 대한 미국의 開放壓力을 초래하였다. 개방의 첫 목표로서 生命保險市場이 선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의 生命保險市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성향의 美國保險社들의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에 대한 진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87년에 2개, 1988년에 1개, 1989년에 7개의 외국사들이 지점, 합작사, 현지법인 등의 형태로 시장진입이 허용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1988년과 1989년에 8개의 지방사와 6개의 전국규모의 내국사가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있어, 현재 30개의 生命保險會社들이 시장

에서 경쟁하고 있다. 금융의 세계화 추세와 아울러 규모면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에 대한 높은 국제적인 관심을 고려할 때 앞으로 더 많은 수의 국제적인 生命保險會社들의 국내시장 진입이 예상된다.

3. 金利自由化와 保險經營

1) 金利自由化와 影響

실물경제성장의 보조수단으로서 규제위주의 金融政策에 따른 金利規制는 人爲의 資金配分으로 인한 資本의 非效率의 利用, 투자 및 소비활동에 대한 金利의 景氣對應的 調節作用 沮害,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의 자본화에 따른 주가 및 환율변동의 金利조절에 의한 衝擊吸收 技能不足, 일정한 예대마진의 보장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經營效率 低下, 金利體系의 不合理性 등의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經濟規模의 성장과 市場開放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정책은 한계에 부딪쳤으며 민간 주도경제로의 전환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金融市場은 실물경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金利의 시장기능에 의한 결정을 통한 자금의 效率的 配分, 金利를 통한 景氣調節의 간접 규제, 금융산업의 效率性과 競爭力 提高 등을 위한 金利自由化의 필요성과 더불어 외국의 압력에 의하여 金利自由化가 추진 중이다. 그 기본방향은 실물경제여건, 금융시장상황 및 경제주체의 대응능력 등의 여건을 감안한 漸進的, 段階的 金利自由化를 추구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여신금리를 수신금리보다 그리고 장기금리를 단기금리보다 우선적으로 自律化하는 4단계의 金利自由化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金利自由化에 따른 여신 및 수신의 실제 금리의 가시화로 소비자의 금리에 대한 敏感度가 급격히 상승될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수신금리를 포함하는 전면적 자유화가 될 경우 金融機關間 受信競爭의 결과로 制度, 非制度金融間, 第1, 第2金融機關間 대규모의 급격한 자금이동과 예대마진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금융기관의 收支惡化와 經營危險增大가 예상되고 있다.

2) 金利自由化와 保險經營

生命保險會社의 경영에 있어 金利自由化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요내용은 보험영업부분에 있어서의 生命保險商品의 가격결정과 자산운용부분에 있어 貸出金利의 自律化 및 資産運用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이다.

(1) 生命保險의 價格決定

生命保險의 가격결정은 직접적으로는 예정이율, 예정사망율, 예정경비에 의하여 결정되며, 배당부보험의 경우 契約者配當까지를 포함하여야 최종가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生命保險商品에 있어서 金利自由化는 좁게는 예정이율, 크게는 예정사망율과 예정경비 뿐만아니라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정부규제는 다음과 같다.

① 豫定利率, 豫定死亡率 및 豫定事業費

예정이율, 예정사업비, 예정사망율은 모두 '生命保險의 保險料算出 및 商品開發基礎 指針'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료산출과 책임준비금 산출에 동일한 이율을 공동적용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장기성과 책임준비금의 보수성등을 고려하여 定期豫金金利의 70-80% 수준으로

하여 현재 7.5%를 사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상품의 내용등에 비추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다른 요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하여 정기에 금금리, 약관대출금리 등에 연계한 金利連動型金利를 허용하고 있다. 豫定死亡率은 제2회 經驗生命表를 보험종류(配當保險, 無配當保章性保險, 純粹年金保險)에 따라 구분사용하도록 하고, 예정사업비는 개인, 단체 및 저축성, 보장성보험을 구분하여 사업비 종류별로 한도를 두고있다.

② 契約者配當 (IV장 참조)

'契約者配當金の 積立과 配當에 관한 指針'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利源別 配當으로 모든 회사와 상품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2) 資産運用部門

① 貸出金利

현재 生命保險會社들의 資産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貸出金의 금리는 제도적으로는 자유화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지도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企業貸出金利는 은행권의 프라임 레이트에 2% spread를 가산하여 결정되며 (12.0-14.0%), 個人貸出金利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보다 1% 높은 수준에서, 約款貸出金利는 14.0%로 규제되어 있다.

② 자산운용

자산운용은 '保險會社의 資産運用準則'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株式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 債券은 총자산의 20% 이상으로 이중 통화안정채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이 총자산의 1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不動產은 업무용의 경우 총자산의

15%이내(투자사업용 포함)로 하도록 하고, 貸出은 동일인 또는 동일담보물건 대출은 총자산의 3%이내에서 中小企業貸出金은 매년 기업대출증가액의 35%이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Ⅲ.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意義

1. 契約者配當의 性格

株式會社形態의 生命保險會社는 타산업과 마찬가지로 株主의 자본참여에 의하여 설립되고 경영진은 궁극적으로 株主에게 책임을 지며 株主의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生命保險商品을 생산·판매한다. 따라서 契約者들이 지급하는 保險料에는 보험운영비용뿐만 아니라 株主의 자본투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利益이 포함된다.

한편 株主가 없이 契約者에 의해 소유되는 組織形態인 相互會社는 원가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배당부계약을 판매한다. 이와같은 配當附契約은 契約者에게 配當金을 지급하며, 契約者에게 配當金을 지급한다는 것은 보험사업의 성과에 대한 契約者의 참여를 의미한다. 無配當契約에 있어서는 일단 契約이 판매되면 모든 결과는 회사에 귀속된다. 만일 死亡率, 經費率, 投資收益率이 불량하게 나타난다면 그 회사는 이익의 감소 나아가서는 손실을 볼 수 있는 한편, 이들 요소들의 결과가 양호한 경우 超過收益을 향유할 수 있다.

配當附契約의 경우 그 기본적인 목표가 契約者들에게 실비로 保險을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회사의 실제사망율, 경비율, 투자수익율의 결과는 契約者들에게 귀속되어 契約者配當이라는 장치를 통하여 配分된다.

配當附契約의 보험료수준은 無配當契約의 보험료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이유는, 첫째, 配當附契約이 음의 성과에 대한 부담을 위한 緩衝金額의 필요성과, 둘째, 配當附契約은 財務的 自立을 기반으로 한 집단들간의 公平性 維持에 대한 개념으로 회사전체의 財務狀態에만 중점을 두는 무배당계약에 비해 緩衝金額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데 있다. 원초납부보험료의 수준은 配當附契約이 무배당계약에 비하여 높으나 배당부계약은 운영성과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이 있기 때문에 최종원가비교는 배당금지급후에야 가능하게 된다.

契約者配當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配當金의 例示가 있는 경우 이를 배당의사의 표명으로 보아 배당금은 사망보험금과 유사한 계약상의 내부적인 급부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주장이 있으나 契約者配當은 계약에 대해 원래 부과된 보험료의 초과분에 대한 환불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배당금은 그 支給計劃이 예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準備金에 포함되어 있는 死亡保險金이나 기타 급부금들과는 달리 보증된 급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배당금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영업성과의 참여라는 운영방법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다. 배당금은 보험의 일차적인 기능인 死亡保險金の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며 배당금의 원천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超過保險料이며 따라서 초과분의 환불이 配當金이라는 것이다.

2. 契約者配當金額의 決定과 配分

相互會社는 契約者가 회사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잉여금이나 契約者配當에 관한 이론의 도출에 있어 상대적으로 단순한 상황을 제공한다. 株式會社

가 배당부계약을 판매한 경우 회사의 소유자인 株主에게는 株主配當, 契約者에게는 契約者配當이라는 두가지 형태의 配當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상대적으로 복잡하다. 그러나, 相互會社에 있어서의 契約者配當에 관한 이론은 株式會社가 판매한 배당부계약에도 그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配當金이란 원칙적으로 剩餘金과 연관되어 있으며, 배당금의 결정과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잉여금의 필요성과 잉여금이 필요하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잉여금이 회사운영상 적정한가 하는 문제이다. 잉여금의 수준이 결정되면 당해연도의 이익금중에서 얼마만큼이 契約者에게 배당될 수 있는가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配當可能金額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부딪치는 문제는 이 금액을 契約者들간에 어떻게 공평하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잉여금은 회사의 資産과 負債의 차액이라고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자산의 가치와 계약의무로부터 발생하는 부채의 크기는 측정기준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평가가 요구된다. 자산과 부채의 크기가 적정하게 결정되면 다음으로 경영진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은 당해연도의 이익 즉 당해연도의 잉여금증가분을 여러용도에 배분하는 일이며, 이 과정에서 配當可能剩餘金이 결정된다. 이와같이 契約者에 대한 총배당금액의 결정은 필요잉여금의 크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일단 당해연도의 이익금 즉 잉여금증가액이 결정되면 다음단계는 이를 財務安全과 成長 및 競爭力提高에 연관한 社內留保와 契約者에 대한 配當分으로 배분하는 일이다.

相互會社가 잉여금의 적정수준을 결정하고 난 후에 해야 할 의사결정은 배당가능잉여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契約者들사이에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다. 相互會社의 소유주는 契約者인 바, 배당가능잉여금을 契約者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계약자와 해약계약자, 구계약자와 신계약자, 다양한 상품, 다양한 요율체계 등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分配上의 公平性を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한편, 잉여금축적의 기여도에 일치되는 契約者配當金의 할당은 契約者들간의 公平性を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다.

3. 株式會社에 의한 配當附契約販賣와 契約者配當

組織形態와 商品의 특성상 株式會社는 無配當契約을, 相互會社는 配當附契約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株式會社形態를 가지면서 配當附契約을 부분적으로 판매하는 현상이 예외적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生命保險會社들은 모두 株式會社形態를 지니면서 配當附契約만을 판매하고 있어 극히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株式會社의 組織形態를 가진 生命保險會社가 配當附契約을 판매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財務的인 측면과 競爭力提高의 측면들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정에서의 취약한 경제기반과 生命保險市場, 영세한 資本金과 불량한 財務狀態 등을 고려할 때 財務安定性提高, 資產成長, 利率競爭 등이 配當附契約販賣의 특히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株式會社形態를 가지면서 配當附契約을 판매하는 生命保險會社의 경우 配當金은 두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즉, 契約者에 대한 配當과 투자자인

株主에게 투자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株主配當이다. 따라서 剩餘金の 蓄積과 配分에 있어 소유권이 없는 配當附契約者들과 소유주인 株主 사이에 상충되는 利害關係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契約者와 株主 사이의 利害關係의 軸점은, 첫째, 利益金の 社內留保(잉여금의 축적) 및 總配當可能金額(株主配當과 契約者配當을 모두 포함)의 결정에 관한 것과 둘째, 總配當可能金額의 契約者와 株主간의 分配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IV. 우리나라의 現行 契約者配當制度와 配當準備金の 積立方法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들의 契約者配當과 配當準備金の 적립은 '契約者配當準備金 積立 및 配當에 관한 指針' 과 '生命保險會社 剩餘金 및 再評價積立金 處理 指針' 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現行 契約者配當制度

1) 配當金の 種類

(1) 確定配當

예정이율과 시중 정기예금금리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금액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확정배당율

확정배당율 = ((정기예금금리 - 0.5%) - 예정이율)

(2) 利差配當

실세금리를 반영하기 위한 배당으로 2년이상 유

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배당금액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이차배당율

이차배당율 = 이차배당기준율 - (확정배당율 + 보험상품별 예정이율)

利差配當基準率은 10% - 12% 내에서 보험회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3) 長期維持特別配當

장기유지의 장려와 장기유지로 인한 투자수익과 효율성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6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장기유지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배당금액 = 전보험년도말 해약환급금식 보험료적립금 × 장기유지특별배당율

장기유지특별배당율 = 1.0% + (경과년수 - 6) × 0.20%

(4) 死差配當

예정사망율과 실제사망율의 차이를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보험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배당금액 = 위험보험료 × 사차배당율

사차배당율은

$$1 - \frac{\text{제2회 경험생명표상 사망율(성별, 연령별)의 78\%이상 88\%이하}}{\text{보험료산출시 사용한 예정사망율}}$$

로 하여 주어진 범위내에서 회사가 결정하도록 하여 약간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5) 再評價特別配當金(V장 '재평가적립금의 처리' 참조)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배당하기 위한 것으로 재평가일 1일전 현재 2년이상 유지된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배당금액은 재평가일 1일 현재의 보험료적립금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계약의 만기 또는 환급금 지급시에 지급한다.

2) 配當金支給時期와 方法

보험년도말 지급(단 재평가특별배당금은 예외) 하며 배당발생후 실제지급시기까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부리한 이자 상당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배당방법은 현금지급, 납입할 보험료와 상계, 보험금 또는 제한급금지급시 가산방법 중에서 契約者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2. 契約者配當準備金の 積立과 剩餘金の 처리 (〈그림-1〉 참조)

契約者配當을 위한 準備金の 적립은 정부의 '생명보험회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으며 확정배당준비금, 契約者配當準備金, 總額契約者配當準備金 등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1) 確定配當準備金の 積立

직전사업년도말 K율 수준의 責任準備金を 적립하고 난 후 確定配當金を 우선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잔여액이 配當前剩餘金이 된다. 따라서 이 確定配當準備金은 이름 그대로 영업성과와 잉여금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2) 당해사업년도의 契約者配當準備金

이는 利差配當, 死差配當, 長期維持配當에 대한 積立金이다.

이 準備金 결정의 첫째단계는 배당전잉여금을 契約者持分과 株主持分으로 구분하는 일이다. 이 구분은 회사별 K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되어 있으며, 이 범위내에서 각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표-1) K율에 따른 契約者持分과 株主持分

K율	계약자지분	주주지분
100%이상	70%이상	30%이하
50-100%	80%이상	20%이하
50%미만	90%이상	10%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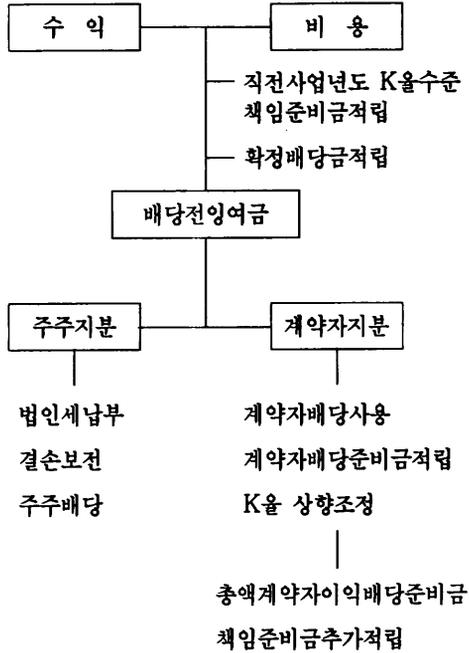
이중 株主持分은 법인세 등의 납부재원, 결손보전 및 株主配當 등으로 사용(株主配當은 K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契約者持分은 契約者配當으로 사용 또는 적립하거나, K율을 상향조정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배당전잉여금이 불충분할 경우 契約者配當金の 적립이 충분히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3) 總額契約者配當準備金の 積立

契約者持分중 당해사업년도의 契約者配當金を 적립한 후의 금액은 總額契約者利益配當準備金으로 적립하거나 책임준비금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契約者配當을 위한 담보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전잉여금이 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총자산(이연자산 포함)이 解約還給金式 保險料積立

(그림-1) 準備金積立 및 剩餘金配分



금으로 계산한 부채총액보다 일정금액(92사업년도: 60억원, '93사업년도: 100억원)을 초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V. 現行 契約者配當과 準備金積立制度의 問題點

1. 政府의 지침에 의한 劃一的 規制

生命保險會社들간에는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危險選擇過程에 있어서 인수대상의 선택기준의 엄격도에 따라, 투자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운영자산을 구성하는 책임준비금과 기타 비상위험준비금, 이익배당준비금의 수준 즉 보유계약수준에 대비한 운영자산의 비

율차이에 따라, 계약유지를 포함하는 경영효율의 차이에 따라, 實際 投資收益率, 死亡率, 經費率이 회사들간에 상당한 營業成果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KOL, 배당준비금, 자본금 등 財務狀態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차이는 既存社들과 新設社들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料率決定에는 '보험료산출 및 상품개발지침'에 의하여 획일적인 豫定死亡率, 豫定利率, 豫定經費率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契約者配當은 契約者配當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배당의 종류와 각각의 배당율이 지정되고 있다. 다만, 利差配當率과 死差配當率에 있어 작은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金利自由化를 포함하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시장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획일적인 配當政策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나 경영효율향상, 경쟁력제고의 관점에서나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2. 費差損의 發生과 利源別 獨立配當

현재의 配當制度는 利差, 死差, 費差의 利源別로 독립적인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소비자보호와 아울러 타금융기관의 저축상품들과의 경쟁관계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아직도 관치금융하에서의 폐쇄인 成長競爭, 투자재원확보 경쟁의 지속으로 過多한 新契約費 支出과 부실판매로 인한 높은 解約率로 과다한 費差損이 발생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와같은 費差損에 의한 손실의 누적으로 인한 책임준비금의 불충분한 적립과 납입자본금의 감식에 따른 재무상태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契約者配當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소비자보호와 경쟁의 목적상

단기적인 契約者配當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단기순손실과 아울러 재무적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서의 장기적으로 행하여지는 契約者配當은 金利自由化가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3. 契約者配當에 대한 情報의 不在

金利自由化에 따른 소비자의 금융상품의 금리에 대한 敏感度 上昇은 生命保險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저축부분에 대한 투자수익에 대해 소비자의 관심은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 契約者配當에 대해서는 생명보험표준약관 제7조(배당금의 지급)에서 “(1)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2) 회사는 이익금이 발생할 때는 별도로 재무부장관이 인가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들에게 이익배당금을 드립니다.”라고 하고있고, 생명보험표준사업방법서의 제20조(배당준비금)에서 “(1) 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확정배당준비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립한다”고 하며 1항 1호는 “계약자 준비금은 매 사업년도말에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1항 2조는 確定配當準備金の 계산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契約者의 입장에서 보면, 生命保險의 구입시 그 계약이 배당부임을 알 수는 있으나 배당될 금액에 대한 정보 즉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확정배당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利益配當金을 받기로 되어 있으나 양자 모두 그 금액 얼마가 될지는 예측하기가 힘들다. 물론 生命保險商品 들에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며 정부가 契約者의 保護라는 차원에서 契約者配當을 결정하고 있으나

契約者의 입장에서 보험상품 및 보험회사의 선택에 있어서나(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차배당율과 사차배당율은 현재 작은 범위이지만 회사별 배당차이가 있을수 있음), 타금융상품과 비교하여 生保商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4. 株主와 契約者間 關係의 未定立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들은 모두가 株式會社 형태를 가지면서 배당부계약을 판매하고 있는 한편, 아직 공개된 기업은 없으며(공개철차를 밟는 중의 회사들은 있음), 기존사와 많은 신설사들은 대주주 지분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所有와 經營이 전혀 분리되지 않았거나 전문경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주주의 강력한 통제하에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의사결정들이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 사실상 행하여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주주들이 株主配當과 주식의 價値上昇에 의한 부의 상승과 아울러 경영참가를 통한 여러가지 이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契約者의 희생위에 株主의 利益이 도모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株主와 契約者사이의 관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못하여 여러가지 갈등요인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契約者持分과 株主持分 구분상의 모호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契約者配當前剩餘金の 區分(‘계약자배당준비금’ 참조)

負債의 성격인 契約者配當準備金の 적립 또는 계약의 안전을 위한 계약준비금에 대한 K올의 상향조정이 되기전에 株主持分の 우선적 확보가 허용되는 점과, K올이 높은 회사는 재무적인 안전

성 확보의 실적이 높다 보고 K율수준에 따라 株主持分을 차등화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2) 再評價積立金の 처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시 資産再評價差益에서 재평가일 1일전의 대차대조표상의 이월 결손금과 재평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再評價積立金이 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우선 재평가적립금은 각회사의 K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적으로 株主持分, 契約者持分, 處理留保額으로 구분된다.

(표-2) K율에 따른 株主持分, 契約者持分, 處理留保額

K율	주주지분	계약자지분	처리유보액
100%이상	30%이하	40-70%	0-60%(30%)
50%이상 100%미만	20%이하	40-80%	0-60%(40%)
50%미만	10%이하	40-90%	0-60%(50%)

*()는 주주지분을 최고한도로 계약자지분을 최소한도로 했을 경우

그리고, 株主持分은 자본전입과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등의 보전에 사용되며, 契約者持分은 부채계정으로 처리되어 1/3 이상이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계리되어 매년 동금액에 최근 3개사업년도의 平均資産運用收益率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익사업재원으로 출연하고 잔여액의 1/2은 재평가특별배당금으로 그 나머지는 契約者配當安定化準備金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이 아닌 처리유보액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결손보전(결손보전사용액은 株主持分이익으로 우선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또는 契約者配當 財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처리는 우선 K율에 따른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の 구분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러한 구분에는 株主의 자본의 역할과 契約者의 평가자산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리고,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の 할당비율이 자의적이며 株主持分을 최고한도로 한다고 가정하면 契約者持分과 처리유보액의 구분에 상당한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를 주고 있다. 그런 한편, 契約者持分중 1/3 이상이 공익사업출연기금으로 출연되어 회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처리유보액이 缺損補填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持分의 성격이 상당히 모호하다.

5. 契約者間의 公平性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는 公平性이다. 금리에 민감한 契約者는 자신이 불공평하게 취급된다고 판단되면 상품이나 회사를 변경하게 될 것이다. 契約者配當의 公平성은 契約者의 잉여금축적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契約者配當金의 할당이다. 현행 정부의 지침은 어느 契約者에게나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契約者의 公平한 취급에 대한 내용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계약자와 해약계약자, 구계약자와 신계약자, 다양한 상품, 다양한 요율체계 등 복잡한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分配上의 公平性を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6. 契約者配當準備金積立의 不充分

契約者配當이 정부의 지침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한편 부채의 성격인 契約者配當準備金의 완전한 적립은 충분한 잉여금이 있을 때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있다. 確定配當에 대한 準備金이 영업결과에 관계없이 전액 적립이 강제되어있는 한편, 사차, 이차, 장기유지배당에 대한 契約者配當準備金의 경우 契約者配當準備金이 완전히 적립되기 전에 배당전잉여금의 일부가 株主持分으로 확보되어 契約者持分이 적을 경우 契約者配當準備金이 충분히 적립될 수 없다. 그리고, 擔保力의 확보에 있어서도, 배당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즉, 확정배당준비금을 완전히 적립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만 자본금증액 등을 통한 담보력확보를 요구하고 있어 契約者配當準備金이 불충분한 회사에 대한 담보력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VI. 生命保險 契約者配當의 政策課題

1. 政策方向

生命保險市場의 開放과 함께 金利自由化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국제화, 자율적인 금융기관간의 경쟁유도 등의 금융자율화 추세는 生命保險產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生命保險은 보험 특유의 보장이라는 기능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축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生命保險商品의 내용이 저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융자율화와 더불어 소비자의 가치분소득을 획득하기 위한 보험상품과 타

금융기관의 저축상품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여질 것이 예상되어 生命保險會社의 경쟁력제고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自由競爭市場에서는 보험회사의 능률향상에 의한 契約者配當增大는 보험회사의 시장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하고 비능률적인 보험회사는 도태되어진다. 정부기관의 감독하에 가격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보험회사의 비능률이 契約者에게 전가되면, 비능률적인 보험자들이 보험시장에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한편 능률적인 보험자은 가격인하를 통한 市場占有率의 증가를 대신하여 준지대의 이익을 향유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구조와 시장행위의 상황에 있어 감독기관이 주체가 되어 보험회사의 經營合理化對策을 수립하고 不實經營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능률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시도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경영비능률은 보험회사자체의 경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들 스스로가 경영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문제의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의 자발적인 經營合理化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본원리는 경쟁의 원리이다. 따라서, 生命保險產業이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대내외적인 경쟁고조와 자율적인 금융환경에 노출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생보사들의 경쟁력제고와 契約者保護를 위해서는 종래의 획일적인 契約者配當政策은 이제 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가격경쟁의 요소인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필연적인 추세로 판단된다.

그러면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生命保險產業에 항상 유익할 것인가? 契約者配當 自律化에 따른 가격경쟁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인 피보험자의 이익을 향상시킨다고 주장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우

리가 유의하여야 할 점은 이러한 契約者配當 自律化의 이점은 경쟁이라는 개념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契約者配當 自律化는 生命保險市場에서 충분하고 유효한 경쟁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保險事業이 정부의 감독을 받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주된 이유는 보험회사의 파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의 이유는 被保險者들에 대한 불공평한 처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保險監督의 주목적은 소비자대중이 경쟁시장의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市場競爭의 부

족함을 보완하는 데 있다. 보험감독의 이러한 목적은 보험산업에서 다음과 같은 순수경쟁시스템의 요소(들) 즉, 다수의 판매자들(이들중 어느 하나도 가격에 영향을 줄 정도로 거대하지 못함), 다수의 구매자들(이들중 누구도 할인을 받을 정도로 거대하지 않음), 동일한 상품, 기업들의 시장진입과 퇴출의 자유, 시장내에서의 상품과 가격에 대한 완전한 지식 등이 결여되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은 신규 기업들의 시장진입에 의해 회사의 수가 3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기존 6개사들 특히 상위 3개사들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신설회사들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표-3)

1991회계년도 生命保險市場의 規模

(단위: 억원, %)

구 분	수입보험료		신 계약		총 자산	
	액	비율	액	비율	액	비율
기존6개사	165,790	85.6	2,552,650	82.2	343,260	88.4
신설사	27,981	14.4	554,080	17.8	45,001	11.6

保險監督의 궁극적 목적은 消費者의 保護에 있으며 소비자의 보호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없는 감독내용은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生命保險市場의 경우 寡占市場形態의 談合이나 기타 反競爭形態의 행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價格競爭과 상품개발 및 서어비스 혁신, 판매경로혁신 등의 有效競爭을 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아니라고 보여진다.

보험회사의 經營效率化를 통한 競爭力提高와 契約者保護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契約者配當 自律化가 필요한 한편, 보험의 특수성과 현재와 같은 시

장구조를 고려할 때 전면적 自律化는 담합에 위한 요율결정이나 무리한 配當競爭으로 인한 파산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면서 契約者配當 自律化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한된 配當競爭, 소위 말하는 감독하의 경쟁(regulated competition)을 도모하는 정책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경영성과의 증거에 기초한 契約者配當의 허용과 아울러, 현재와 같이 생명보험회사들간의 심한 격차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일정범위내에서의 配當自律化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제한된 配當競爭도 과다경쟁을 초래하여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바, 破産防止를 위한 보다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配當自律化는 株主와 契約者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바, 양자간의 이해관계를 미리 정립하는 것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2. 契約者配當 自律化의 先決課題

여전이 성숙되기 전의 성급한 自律化는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契約者配當의 自律化의 목적인 生命保險會社의 경쟁력제고, 생산성향상과 契約者保護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이 있다.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나 여기에는 몇가지 시급한 선결과제가 있다.

1) 財務安定性 確保

契約者配當은 이론적으로 超過保險料의 환불로 볼 수 있는 한편 회사전체의 재무적 안전을 해치는 배당은 궁극적으로 契約者들의 이익에 위배될 수 있다. 따라서 契約者配當 自律化의 기본적인 전제는 회사의 충분한 재무적 안전성의 확보이다. 이러한 재무적안전이 확보된 후에야 配當自律化政策에 대한 논의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들은 생명보험사업의 규모에 비하여 자본규모가 작아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生命保險會社들은 모두 株式會社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상의 위험 즉 보험영업이나 자산운용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제1의 완충장치는 資本金(납입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이다. 契約者에 대한 의

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부채 성격의 契約準備金에 대한 자본금의 비율은 1991년말 현재 기존사들은 1.89%, 신설사들은 8.96%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總資産에 대한 資本金의 비율은 1991년말 현재 기존사들은 1.82%를 신설사들은 8.04%를 보이고 있어, 사업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의 규모가 매우 작아서 보험영업상의 손실이나 자산운용상의 손실에 대한 완충장치로서의 資本金의 役割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생명보험사업의 운영은 그 특성상 손실의 측정(사망률의 예측)이 정확한 한편, 配當自律化는 配當競爭과 아울러 이에따른 고수익 고위험투자로 인한 투자위험의 증대를 초래할 수 있어 보험회사의 安定性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契約者配當自律化下에서 현재의 소규모의 자본으로서 거대한 규모의 생명보험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生命保險會社는 보험수익자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保險金, 滿期還給金, 契約準備金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정한 금액의 契約準備金を 적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準備金은 生命保險會社의 부채로서 충분한 적립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보험급부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의 파산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準備金の 충분성은 生命保險會社의 안정성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정부감독기관은 적립방식을 정하여 적립금액을 감독하고 있다. 이 契約準備金은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生命保險會社의 자산형성의 주된 財源이 되고있다. 그리고 이 契約準備金은 保險料積立金, 未經過保險料, 支拂備金, 配當準備金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보험료의 선불에 대한 적립인 보험료적립금이 契約準備金總額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契約準備金の 충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감독기관이 정한 적립방법이다. 현재 우리 生命保險에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K율방식이다.

$$K = \frac{V - V^{(w)}}{V^{(N)} - V^{(w)}}$$

= $\frac{\text{최저준비금에서 추가로 적립한 금액}}{\text{법정 최고준비금과 최저준비금의 차액}}$

V : 실제 적립한 준비금

$V^{(w)}$: 7년상각 解約還給金式 준비금(최저한도)

$V^{(N)}$: 순보험료식 준비금 (최고한도)

따라서 이러한 K율의 허용범위가 0%에서 100%인 관계로 우리 생명보험사들의 契約準備金の 적립수준은 각기 상이하며 따라서 準備金の 충분성에서도 차이가 있다. 현재, 기존 대형 2개사만이 100%의 K율로 적립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들은 대부분 50%에 못미쳐 부채에 대한 충분한 準備金の 적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K율이 0%인 해약환급금식이라 하여 準備금이 꼭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투자자산가치의 감소, 영업손실 등의 재무적인 악화요인이 있을 때 契約者保護를 위한 準備金の 충분성은 그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와 같이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목적의 강제적인 準備金인 MSVR(Mandatory Security Valuation Reserve)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투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 生命保險會社들의 경우 純保險料式的 契約準備金 축적은 안정성 유지에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契約者配當을 위한 적립금도 일단 배당이 결정되면 충분히 적립이 되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開放經濟는 보험사들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전제로 한다. 監督政策의 임무는 보험회사간의 경쟁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과도한 경쟁방지를 통하여 보험사의 財務的 安全을 유지하는 일이다. 물론 후자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자의 보호에 있다. 契約者配當 自律化는 경쟁의 중대로 인하여 소비자보호와 생보사들의 財務安全性 維持를 보다 중요하게 하는 바, 보험료 대 총자본의 비율, 자산 대 총자본의 비율의 유지, 적립금의 충분한 유지 등을 통한 보다 확실하고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다.

2) 株主와 契約者간의 關係定立

株式會社가 配當附契約을 판매하는 경우 株主와 契約者간의 利害葛藤關係는 필연적이며 株主는 경영자 통제를 통하여 契約者의 회생위에 자신의 부를 도모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으며, 契約者配當의 自律化의 경우 이러한 利害葛藤은 더욱 복잡해지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契約者간의 利害關係의 정립은 필수적이며 이는 제도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바로 株主計定과 契約者計定の 分離計理이다. 分離計理가 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될 경우 配當附契約의 營業結果가 株主計定과 자동적으로 병합되기 때문에 利害關係의 葛藤이 계속될 것이며 이의 조정을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계속하여 개입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配當附契約은 그 성격상 스스로의 자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株主持分은 配當附契約計定에 대해 危險의 緩衝作用을 하며 경영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配當附契約計

定에서 나타나는 利益의 일정비율을 받을 권리가 있다. 契約者配當 自律化에 있어 剩餘金 配分問題는 株主持分과 契約者持分の 分離計理와 株主의 配當附契約의 營業成果에 대한 配分對象과 配分比率에 대한 결정이 주요한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配分對象으로는 營業利益 全體보다는 지급되는 契約者配當金額 또는 契約者配當이 이루어지고 난 후의 殘餘利益 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配分比率은 準備金/資本金 比率에 따라 株主의 配當附契約의 참여비율을 차등화하거나, 참여비율은 일정비율로 하되 準備金/資本金 水準의 일정비율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3) 配當計劃例示 등의 情報提供의 擴大

契約者配當 自律化에 따른 가격경쟁하에서 配當附 生命保險商品에 배당계획이 예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生命保險商品 특히 배당부계약은 비상위험사태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것보다 낮은 예정이율, 높은 예정사망율, 높은 경비율을 사용하여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초과징수보험료의 還拂計劃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타금융상품과의 경쟁에서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된다. 그러므로 配當附契約의 판매시에 배당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충분한 배당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配當計劃의 예시는 미래에 대한 예측과 판단에 입각한 추정치가 되어야 할 것이나, 과도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財務狀態와 經營成果의 증거하에서 결정되도록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시의 준수여부는 각 회사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있으며 그 결과는 소비자의 회사에 대한 신뢰도와 직결될 것이다.

한편 生命保險商品은 그 계약내용이 상이한 경우 직접적인 비교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가 生命保險商品간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유용한 가격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自律化에 따른 회사의 破産危險의 증대에 대비하여 각 보험회사의 財務狀態를 소비자가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는 公示制度의 導入도 바람직 할 것이다.

4) 契約者配當 內容의 單純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契約者配當제도는 매우 복잡하게 되어있어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비교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있다. 특히 利差益配當은 契約準備金の 豫定利率과 상품요율의 豫定利率을 동일하게 하여 매우 낮은 이율을 사용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確定配當, 利差配當, 長期維持特別配當 등 매우 복잡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 배당의 자율화는 소비자의 이해도가 높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상품요율산출의 豫定利率과 계약준비금산출을 위한 豫定利率을 분리하여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利差益配當을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VII. 맺는말

開放經濟는 보험회사들간의 자율적인 경쟁을 전제로 하는 바, 가격요소인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趨勢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자율화의 단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개방경제하에서의 監督政策의 役割은 경쟁의 유도를 통한 보험회사의 生産性 向上과 동시에 과도한 경쟁에 의한 보험회사의 財務的 不安全의 危

險으로부터 契約者들을 保護하는 것이다. 따라서 監督體系는 生保사들의 自律的인 競争을 허용하면서 이들의 재무상태를 엄격히 監督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契約者配當의 自律化는 회사의 財務的 安全을 前提로하는 한편, 현재 생명보험회사들 특히 신설사들의 재무적 안전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재무상태하에서의 가격경쟁적인 목적에서의 契約者配當 自律化는 신설회사들의 재무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생명보험산업의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크다. 契約者配當自律化에 있어 監督政策的 當面課題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재무적 안전의 조속한 확보에 있으며, 다음은 확보된 안전상태의 엄격한 유지를 위한 철저한 監督體系의 確立으로 보여진다.

생명보험회사들의 財務安全性的 확보는 短期的으로는 増資를 통하여 가능하겠으나 이는 미봉채이며, 長期的으로는 잉여금의 수준에 입각한 보험영업의 제한등을 통하여 생명보험회사들이 자기 능력에 맞는 戰略的 經營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경영의 유도를 위한 최우선요건은 財務安全성에 대한 엄격한 유지감독이며, 이를 위해서는 區分計理의 도입, 法定會計와 一般會計原則에 의한 會計의 분리 등의 會計制度의 改善과 確立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김성재, '契約者配當의 理論的 考察', 保險學會誌 33집, 1989. 3, pp. 129-176
 _____, '生命保險會社の 企業公開에 관한 理論的 考察', 保險學會誌 37집, 1991. 3, pp. 143-

167

생명보험협회, 生命保險統計年報, 1992
 재무부,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1991. 8
 _____, 보험료산출기초 및 상품개발지침, 1991. 5
 _____, 생명보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 1991. 5
 _____, 계약자배당준비금 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 1992. 3
 한국보험공사, 保險統計年鑑, 1991.
 한국보험학회, 生命保險 政策方向 研究, 1990.5
 Belth, Joseph M., "Distribution of Surplus to Individual Life Insurance Policy Owner,"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March 1978), pp. 7-26
 Carter, W. Michael, "Capital and Surplus," Life Insurance Accounting, Insurance Accounting and Statistical Association (1977)
 Formisano, Roger A., "Dividend Decisions and the Structure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1978), pp. 329-344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June 1976), pp. 291-304
 Greene, Mark R. and Johnson, Richard E., "Stocks vs Mutuals: Who Control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March 1980), pp. 165-174
 Jackson, Robert T., "Some Observations on Ordinary Dividends," Transactions (1959), pp. 764-811
 Mayers, David and Smith, Jr., Clifford W., "Ownership Structure and Control: The

-
- Mutualization of Stock Life Insurance Compani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16 (1986) pp. 72-92
- Palmer, Bruce A., "Illustrated and Realized Policyholder Dividend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December 1976), pp. 673-692
- _____, "Dividend Illustrations: What are they?," *CLU Journal* (January 1975), pp. 56-59
- Trowbridge, Charles L., "Theory of Surplus in a Mutual Insurance Organization," *Transactions* (1967), pp. 216-232
- Winklevoss, Howard E. and Zelten, Robert A., "An Empirical Analysis of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Surplu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March, 1977), pp. 403-425
- Yahr, Robert B., *Are There GAAPs in Financial Reporting for the Life Insurance Industry*, UMI Research Press, 1980